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43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서미화

전종덕 • 허성무 • 민병덕

용혜인 • 한정애 • 안태준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영업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

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제7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 86조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중 "없다"를 "없으며,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제8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출입·검사등"을 "출입·검사등과 제6항에 따른 단속"으로 한다.

-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를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7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한 자

15의2. 제78조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 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의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	6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		
시설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u>없다</u> .	<u>없으며, 제69</u>	
	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	
	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	
	설운영자가 될 수 없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	
	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u>된다.</u>	
⑧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		
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	

4. ~ 11. (생략)

② ~ ⑥ (생 략)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 ③ 7 (생 략)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7호에 따른 영업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 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2. (생략) ⑤ (생략)

<신 설>

	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	÷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 및
	절차를 따를 것	
	4.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시]86조(출입·검사 등) ① ·	~ ③
	(현행과 같음)	
	4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1 //
	다.	

- 1. 2.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영업을 하는 자를 정기 또 는 수시로 단속하게 할 수 있

⑥ (생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u>출입·검사등</u>의 결 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 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 15. (생 략) <u><신 설></u>

1, 2 2 01 11 10	
에 따른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u>할 수 있다.</u>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u>8</u>	
<u>출입·검사등과 제6항</u>	
<u>에 따른 단속</u>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u>o</u>)	
②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37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	
<u>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u>	
거나 광고를 한 자	
9. ~ 15. (현행과 같음)	
<u>15의2.</u> 제78조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

16. ~ 18. (생 략)

③ ~ ⑤ (생 략)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16. ~ 1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